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
(ACA) 포럼 참석 결과**

2017. 6.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I. 회의 개요 및 일정	1
II. 회의 주요 결과	
1 개회	4
2 기관별 최근 활동 보고	6
3 기관별 발표	10
4 초청 발표	14
5 폐회	16
III.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7
※ 불임 1 참석자	18
불임 2 청탁금지법 발표 내용	20

1 회의 개요 및 일정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포럼
- 일시·장소 : 2017.5.24.(수)~25(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주관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의장국), 국민권익위원회(사무국)
- 참석자 : 4개 회원기관 및 2개 옵저버 기관, 초청 연사 등
30여 명
- 진행 언어 : 영어

□ 진행 순서

- 세션 1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세션 2 : 제7차 ACA 포럼 결과 보고
- 세션 3 : 신규회원 가입 승인
- 세션 4 : 회원 및 옵저버의 최근 활동 및 성과 보고
- 세션 5 : 기관별 주제 발표
- 세션 6 : 초청 주제 발표
- 세션 7 : 폐회식 및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일정
5.24. (수)	09:30-10:30	<p>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박계옥 상임위원 - 기조연설 : Hon. Datuk Dzulkifli bin Ahmad 말레이부패방지위원장 - 장소 : 호텔 3층 Pullman One
	10:30-10:45	단체 사진 촬영
	10:45-11:15	<p>커피 브레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호텔 3층 Pullman One
	11:15-13:00	<p>세션 1 : 오프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Idris bin Zaharudin, Chief of Staff of the MACC - 참가자 자기 소개 <p>세션 2 : 제7차 ACA 포럼 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담당관 발표 <p>세션 3 : 신규회원 가입 승인</p> <p>세션 4 : 회원 및 옵저버의 최근 활동 및 성과 보고 (각 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 발표 <p>세션 5 : 기관별 프레젠테이션 (각 15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MA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청렴담당관 설치·운영을 통한 공공부문 청렴 시스템 구축
	13:00-14:30	<p>오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호텔 1층 Eccucino Cafe
	14:30-16:30	<p>세션 5 : 기관별 프레젠테이션 (각 15분) 계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KP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천연 자원분야 반부패 활동과 인도네시아 사례 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AC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과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부패 방지 - 발표자 : 청탁금지제도과 정윤정 서기관 4.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CP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싱가포르의 부패 방지 경험
	16:30-19:45	휴식
	19:45-22:00	<p>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주최 환영 만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호텔 3층 Pullman Two

일자	시간	일정
5.24. (목)	09:30-11:00	세션 6 : 초청 주제 발표 (부패방지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 - 장소 : 호텔 3층 Pullman Two 1. Tunku Abdul Aziz bin Tunku Ibrahim, Chairman of 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MACC 2. Korea - 한국 투명성기구(TI Korea) / 이상학 상임이사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1:15-12:10	세션 6 : 초청 주제 발표 계속 (부패방지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 3. Anga Timilsina, Programme Manager, UNDP's Global Anti-Corruption Initiative (GAIN), Bureau for Policy and Programme Support 세션 7 : 폐회식 - 자유 토론 - 9차 회의 개최지 선정 논의
	12:10-12:20	폐회사 - Mohd Hafaz bin Nazar, Deputy Chief of Staff of the MACC
	12:20-13:30	오찬 - 장소 : 호텔 1층 Eccucino Cafe
	14:00-18:00	푸트라자야市 공식 방문
	19:00-22:00	환송 만찬 - 주최 : 위원회 - 장소 : 풀먼 푸트라자야 B's 레스토랑

1. 개회

□ 기초연설 및 개회사

- 줄키플리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 제정이나 시스템에만 의존하기보다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함.
- 줄키플리 위원장은 작년 8월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MACC)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부패 행위자를 일주일에 1건 이상 구속 또는 기소하겠다고 공약하였고, 현재까지 그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 정부 주도적인 반부패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일상 생활 속의 부패행위 근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 금번 ACA 포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이는 부패를 유발하는 중간 매개수단을 제거하여 부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85%의 찬성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조기 정착은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부연함.
-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수준은 국제적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회 저변에 내재된 요구들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번 포럼 참석자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함.
- 또한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제9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 [세션 1] 회의 개회

- 의장대리(Dato' Hj. Idris bin Zaharudin 말레이시아 부패방지 위원회 비서실장)의 개회 선언 후 각 참가자들이 자기소개

□ [세션 2] 제7차 ACA 포럼 결과 보고

- 사무국(국제교류담당관)이 신규회원 가입 등 제7차 회의 주요 결과 보고

□ [세션 3] 회원 가입

- 별도의 회원 가입 신청은 없었으며, 읍저버로 참석한 대만 염정서(AAC) 측이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 문의

2. 기관별 최근 활동 보고 (세션 4)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가 출범하면서 KPK 본부를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등 강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음.
- '14년부터 對국민 반부패 인식제고를 위한 텔레비전 채널 (KANAL KPK TV)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GratIS 및 JAGA) 개발,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 재산신고제도(e-LHKPN)를 도입하였으며, 광물·삼림·해양 자원 분야의 공공부문 부패척결을 위한 허가 체제(GNPSDA)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GNPSDA 시스템은 27개 부처와 34개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구축됨.
- 민간 기업 종사자들에게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PROFIT 프로그램”을 시행함.
- 부패행위 조사의 결과로 '16년 한 해 동안 미화 약 39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였음.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 우리 위원회는 공공기관 예산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출범시켰으며, 올해 4월 말까지 총 2,788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984억 원을 환수 조치하였음.

- 또한, 공공재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16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 '16년 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 법률을 기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하였음.
- 작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고·온정주의적 부패관행 및 사회 문화 개선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었음.
- 또한 '16년 9월부터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민간영역의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 출범 및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 반부패 윤리센터(ACE-Anti-Corruption and Ethics Centre)를 개관, 민간영역에의 반부패 교육과 기업윤리 제고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초중등 교과서에 반부패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인식을 초기 교육단계부터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말레이시아어, 타밀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보급함.
- '15.12.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며 MACC.fm 라디오 채널을 개설, 인터뷰, 광고, 노래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MACC 포털,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유튜브, e-뉴스레터, 왓츠앱 등을 통한 소통 역량을 강화함.
- '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이 부패방지 서약에 서명함.
- '17년 1월부터 반부패 혁명운동(Gerah)을 통하여 MACC 2,000여명의 직원들이 매달 첫째 월요일에 현장을 방문, 부패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는 캠페인을 시행 중임.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 '17년 1월에 부패신고 헤리티지 센터(CRHC)를 개관, 일반 대중이 손쉽게 간편하게 부패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독려함.
- '16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84점을 얻으며 순위로 7위에 랭크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함.
- 뇌물방지 관리 체계에 대한 싱가포르 스탠다드 ISO 37001를 구축, '1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국제적 우수사례의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싱가포르 기업들이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것을 기대함.

□ 브루나이 부패방지국(ACB)

- 브루나이 부패방지국(ACB)는 부패예방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제 131장에 의거하여 설립, 부패 조사와 예방 업무를 수행함.
 - 민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포함함.
- 법무장관실의 검사차장이 부패 관련 기소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
- '17.3.29.~31.간 팔라우, UNODC와 함께 스리랑카를 방문,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대만 염정서(AAC)

- '15년 12월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법령을 발효함.
- 염정서와 지방 정부의 협력으로 “식품 안전 및 청렴 플랫폼”을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자들의 부패행위를 위한 체제를 시행중임.
- 최근 “공무원 윤리 강령”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상주 검사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임.
 - 법, 금융, 엔지니어링 등 각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클린 정치 자문 위원회”를 개설, 염정서의 권한과 업무 수행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함.
- “대중 정책 참여 플랫폼”을 이용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 법” 제정을 진행중이며, 금년 7월 19-20 간 “APEC 내부고발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3. 기관별 발표 (세션 5)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 주제 : 청렴담당관 설치·운영을 통한 공공부문 청렴 시스템 구축

- 청렴제도 준수, 부패방지, 감시 등의 기능을 거시적·효율적 관점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청렴부서”를 신설, '13년 8월부터 운영 중임.
 - △거버넌스, △청렴도 강화, △수사 및 검증, △고충 관리, △법 준수, △규율(징계) 등이 청렴 부서의 6개 핵심 기능임.
 - “청렴부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당국 및 부속 기구 등 88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월, 5월, 9월 각 15일에 각 기관 및 MACC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함.
- △“거버넌스 강화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농림부 쌀 보조금 체제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청렴도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191개 기관이 청렴 서약에 참여함. 또한 △“수사 및 검증” 부분에서 임업 관련 26만 링깃(한화 약 7천만원)의 뇌물 수수, 멜라카 지역 임시 영주권 관련 11만 링깃(한화 약 3천만원)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을 조사·처벌하였음.
- △부패 및 권력남용, 행정 서비스 불만과 관련한 고충을 처리하고, △법 준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무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내부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며, '14년 ~ '16년간 총 5,358건 중 4,812건의 징계사건을 해결함.
- 앞으로도 청렴부서 담당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청렴 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 주제 : 천연 자원분야 반부패 활동과 인도네시아 사례

- '10년부터 KPK는 삼림 천연자원 관리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한 삼림 지도 기준의 부재 및 불명확한 삼림구역 지정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음.
- 삼림자원 채취 허가 취득에 필요한 단계별로 불법적인 금품이 오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특히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부패영향평가에 의해 허가 규정 22개 중 18개 법령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채광 분야에서도 허가, 정보, 책무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 KPK가 개선안을 제시, 해당 부처에서 시행토록 함.
 - 채광 허가증 발급과 관련한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CNC(클린 앤드 클리어)기준을 준수하는 허가증을 40% 이상으로 상향함.
 - 에너지부가 단일한 지도 데이터를 작성, 제공하도록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삼림업 금지 지역에서의 채광 허가를 줄일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 재정부에서 세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한편, 채광업체가 재정적 책무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그 결과, '14년 미화 8억 달러 상당의 비과세 수익을 올렸으며, 1254건의 기준 미달 채광 허가를 취소하였고, 채광 업체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지도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총체적인 행정 관리를 가능케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과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부패 방지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법적 제재를 받지 않던 비윤리적 행위의 축소를 통해 새로운 윤리규범을 적립하고자 추진함.
- “청탁금지법”은 모든 공공기관 및 학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및 공무 수행인사를 포함함.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도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 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사유를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는 직접 이해관계자 등 반대하는 여론이 다소 있었으나, 최근 들어 식사 시에 각자내기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불필요한 허례허식 등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동 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 주제 : 싱가포르의 부패 방지 경험

- 싱가포르는 △법률, △독립적 사법기관, △공공 서비스 및 △법집행 등 4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자리매김함.
- 국내에서 신고 되는 부패행위의 대다수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유지·보수” 및 “도·소매업” 분야에서 부패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됨.
-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 사업자들에게 PACT (Pledge, Assess, Control & Communicate, Track)라는 비즈니스 반부패 가이드와 함께 싱가포르 스탠다드 ISO 37001 반부패 관리 체계를 제공, 국제적 비즈니스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특히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이해충돌 행위, 싱가포르 항만청과 부동산 중개인 협회 등의 허가 체제, 싱가포르 의료 협회 및 전문 엔지니어 위원회 등에 구체적 활동 규정을 제정함.
- 민간부문 부패방지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비즈니스 비용 절감 및 투자 유치 등 국가적 경제 개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인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임.

4. 초청 발표 (세션 6) -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

□ 말레이시아 MACC 반부패 자문기구 Tunku Ibrahim 의장

- 부패행위에 대한 피해는 각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받고 있음.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는 개인차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추구할 방향에 대한 목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정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부패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대중들에게 알려야하며, 부패행위와 연관된 기소 건수나 구속 건수 등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함.
- 부패방지 프로세스는 각 가정, 학교, 직장 등 작은 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 전반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부패척결이 가능해짐.

□ 한국 투명성기구 이상학 상임이사

- 사회통합의 주요한 걸림돌이며 국가소득수준의 저하 요인이 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치영역, 비즈니스 영역, 공공영역, 시민사회 영역 등 4가지 주요 분야의 인사들이 함께 '05년 “투명사회 실천 협의체(KPACT)”를 창설함.
- 한국정부는 “청탁금지법”과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음.

- 시민사회의 부패방지 수단으로는 투표, 보이콧, 뇌물 금지, 언론 보도, 데모, 여론조성 등이 있으며, 시민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패방지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인식 수준은 22개 OECD 회원국들 중 6번째로 높은 편임.
- '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일반 시민들이 부패방지에 대한 목소리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UNDP 글로벌 반부패 이니셔티브 Anga Timilsina 박사

- 유엔 반부패협약 제 13장에서는 시민사회가 부패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부패문제는 정치 환경, 사회문화, 경제구성, 기관 조직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는 복잡한 문제인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함.
- 연구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보고됨.
 - 인도의 “시민신고카드” 제도, 우간다의 “지역사회 모니터링”제도, 브라질의 “참여 예산”제도, 인도와 필리핀의 “사회 감사”제도, 탄자니아의 “공공지출금 추적 설문”제도 등
- UNDP는 시민사회의 참여 독려를 위해 “UNDP-UNODC 합동 글로벌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아태지역에 새로운 반부패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음.

- 첫째, 지금까지의 반부패 정책으로는 선제적인 부패척결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상을 분야별로 나누는 것 보다 사회 전 영역으로 총체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둘째, 시민들이 부패관련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관계 당국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정책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행과 감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넷째,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적 접근 방식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과 여성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5. 폐회 (세션 7)

□ 회의 폐회

- 의장대리(Mohd Hafaz bin Nazar)가 폐회 선언

□ 차기 회의 주최국 선정

- 금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 중에서는 차기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불참한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의 종료 후 3개월 내 개최 희망 의사를 사무국(국민권익위원회)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및 필리핀 음부즈만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을 안내

3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주요 성과

- 참석자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정책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을 공감
 - 각 국가별 우수사례 공유 및 활발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
 - ⇒ 향후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사업 등을 위한 발판 마련 의의
- 아태지역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정례회의를 갖고, 강한 부패 척결 의지를 가지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확인
- “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을 포함한 UNDP 등의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에 기여

□ 향후 계획

-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및 ACA 공식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 및 발표자료 게시(6월말)
- ACA 포럼 회의록(영문) 작성 및 참석자 대상 배포(6월말)
- 차기회의 개최국 선정 등 사무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

- ※ 붙임 : 1. 참석자
2. 청탁금지법 발표내용

기관명	이름	직책
국민 권익위원회 (ACRC)	박계옥	상임위원
	김남두	국제교류담당관
	정윤정	청탁금지제도과 서기관
	문소희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한효정	에디터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CPIB)	PHUA Meng Geh	Senior Assistant Director, Special Investigations Branch
	NG Daryl	Principal Intel Officer
말레이시아 부패방지 위원회 (MACC)	Datuk DZULKIFLI bin Ahmad	Chief Commissioner
	Haji Idris bin ZAHARUDIN	Executive Office of the Chief Commissioner
	Junipah binti WANDI	Director of Agency Integrity Management Division
	Rohaizad bin YAAKOB	Director of Excellence and Professionalism Division
	Mohd Hafaz bin NAZAR	Deputy Chief of Staff
	Shamina binti ALI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Branch
	Mugilen MANIAM	Offic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Branch
	Yamusa bin MOHD ISA	Offic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Branch
인도네시아 부패방지 위원회 (KPK)	WARDIANA Wawan	Director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ulistyanto	Research and System Assessment Specialist
	LARASATI Syafira Putri	Cooperation Specialist

브루나이 부패방지국 (ACB) * 읍저버	HAJI SABTU Haji Sufian	Deputy Director
	MOHAMMAD Sabarin	Chief S. Investigator
대만 염정서 (AAC) * 읍저버	LAI Jer-Shyong	Director-General
	NIEH Wen-chuan	Director of Subordinated Ethics Office
	ChANG Chia-Chi	Officer
초청 연사	TUNKU Abdul Aziz bin Tunku Ibrahim	Chairman, 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LEE Sanghak	Standing Board Member, TI-Korea
	HUSODO Adnan	Coordinator, Indonesia Corruption Watch
	Anga TIMILSINA	Program Manager, UNDP's Global Anti-Corruption Initiative



Backgrou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Improper solicitations based on nepotism or favoritism **breed corruption**

Impunity for huge bribery cases without proof of favors in return **increases public distrust**

Breaking the corruption chain by prohibiting improper solicitations

Restoring public trust by punishing bribery regardless of duty-relatedness or any favors in return



To protect public officials acting in good faith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may **undermine fair performance of duties**

Advantages received by a public official's spouse will be **considered as advantages taken by the public official**

Guaranteeing fair performance of duties by protecting public officials who reject improper solicitations from possible disadvantages

No legal liability on a public official who reports and returns advantages received by his or her spouse



Main Contents of the Act

1. Scope of application

Organizations



- ✓ All th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constitutional institution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municipal o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 ✓ Private and public schools of various levels, educational corporations, and media companies

Individuals



- ✓ Public officials or relevant persons: Civil servants of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head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schools, educational corporations, and media companies
- ✓ Spouses of public officials
- ✓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 * Members of various committees; private persons with an authority delegated from public institutions; those on assignment from the private sector to a public institution; individuals conducting deliberation or assessment in relation to public duties
- ✓ General public (Private persons who improperly solicit public officials or who offer them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Main Contents of the Act

2.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14 types of improper solicitations

1 Exerting influence over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2 Mitigating or exempt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r punishments	3 Intervening in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appointment or promotion	4 Trading in influence over appointment to a position intervening in the decision-making of public institutions	5 Intervening in selecting winners of award or prize granted by public institutions
6 Disclosing duty-related confidential information on tender, auction, etc.	7 Intervening in selecting contract winners, etc.	Violation of laws & regulations + Abusing position or authority	8 Intervening in assignment or provision of subsidies or investment	9 Abnormal transaction practices of goods & services produced or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10 Handling or manipulating admission or grades at schools	11 Handling matter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including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s	12 Intervening in assessments and judgments performed by public institutions	13 Manipulating the outcome of administrative guidance, control, etc. or ignoring discovered violations	14 Intervening in investigation, judgment, etc. of a case

Main Contents of the Act

2.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Sanction level by improper solicitation types

Requirement		Sanction level
Subject	Types	
Stakeholders	Improper solicitation for oneself	No sanction
	improper solicitation through a third party	administrative fine up to 10 mil. Won(\$ 10,000)
Third party	Improper solicitation for a third party	administrative fine up to 20 mil. Won(\$ 20,000)
Public officials, etc.	Improper solicitation for a third party	administrative fine up to 30 mil. won(\$ 30,000)
	Performing duties directed by improper solicitation	imprisonment up to 2 years or fine up to 20 mil. Won(\$ 20,000)

Main Contents of the Act

3. Prohibition of graf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Main Contents of the Act

3. Prohibition of graft

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s exceptions)

1.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at a public institution offers to its public servants
2. Food and beverages under \$30 and gift under \$50 offered for purpose of facilitating performance of duties, social relationships or rituals
3.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offered from a legitimate source of right
4.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offered by relatives of a public official
5. Advantages given to a public official who is in need by those who have long-term, continuous relationships
6.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food, etc. uniformly provided to all participants
7. Souvenirs or promotional goods distributed to many & unspecified persons, or prizes given by a contest or lottery
8.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ermitted by any other statutes, standards or social rules

Main Contents of the Act

3. Prohibition of graft

Sanction level by graft types

Graft types	Subject	Sanction level
Receipt of a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in excess of one million won(\$1,000) at a time or three million won(\$3,000) in a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A public official who received the graft <u>regardless a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u>	Criminal punishment imprisonment for up to 3 years or a fine up to 30 million won(\$30,000)
	A person who provided the graft to a public official <u>regardless a connection with a public official' s duties</u>	
Receipt of a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1,000) ,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A public official who received the graft <u>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u>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of 2-5 times the amount of the advantages
	A person who provided the graft to a public official <u>in connector with a public official' s duties</u>	

Main Contents of the Act

4. Reporting and handling of vio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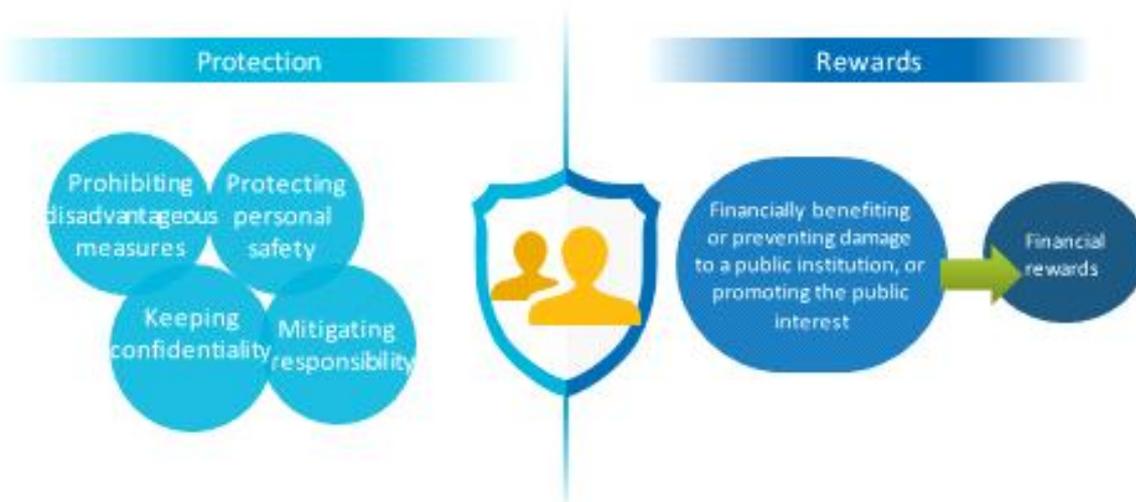
Process of reporting and handling the violation of the Act



■ Main Contents of the Act

4. Reporting and handling of violations

● Protection measures and rewards for reporting persons



■ Performance Overview for Six months

Report status

- **547 report** in the six month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 412 cases of graft, 135 cases of improper solicitations
- 19 cases were referred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for criminal penalty
 - 38 cases have been asked to court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 51 cases are under investigation and 439 cases were closed for lack of evidence

Performance Overview for Six months



Violation Cases

Improper solicitations

- ✓ A professor provided credits for an absent student residing overseas.
- ✓ Public medical center allowed a certain patient to skip to the head of the line.
- ✓ A chief of a fire station ordered a subordinate to overlook law violations of the station and a supplier requested an inspector to approve their product.

Graft

- ✓ A criminal suspect handed over \$20,000 to the investigator in charge of the case.
- ✓ A school sports coach requested \$8,000 from students' parents as a retirement bonus.
- ✓ A government official supervising a construction site accepted \$1,000 from a construction company.
- ✓ A parent provided the homeroom teacher of his or her child with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Performance Overview for Six months



Changes in tradition and behavior

Decrease in entertainment costs for enterprises

- ✓ Corporate spending on entertainment down by 28% after the law

Changes in the way people their bills



Government officials and lawmakers stand in line to pay their own bills after a lunch meeting.

Voluntary conformity of public officials

- ✓ Voluntary reports from government officials accounted for 62% in the case of graft.
- ✓ The officials who reported themselves returned various valuables ranging from liquor and gift certificates to \$20,000 in cash.

Public Support

- 85% of South Koreans support the law
- 72% of South Koreans perceive to be improper the solicitations and graft that had been conventionally given and received in the past
- 85% of South Koreans think the law may have negative short term impact but will eventually help point society in the right direction